한국경제포럼 제 13 권 제 1 호 67-103 DOI: 10.22841/kefdoi.2020.13.1.003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 현 진**·주 현 수***

논문초록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 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 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 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 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 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 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동산금융, 중소기업, 동산담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1. G2

투고 일자: 2020. 1. 8.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3. 6. 게재 확정 일자: 2020. 3. 20.

^{*} 본 논문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본 논문의 가독성 과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김·장법률사무소 수석연구원, e-mail: clotilde2c@gmail.com

^{***} 교신저자, 한국금융연수원 부교수, e-mail: joo@kbi.or.kr

I. 서 론

은행의 대출활동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은행 고유의 업무로, 은행들은 대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며 담보로는 부동산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즉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자금 수요가 만성적이지만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담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담보 대출인 신용대출이 존재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담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동산담보를 이용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의 약 30~40%가 ABL (Asset-Based Lend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며, 여기서 동산이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중소기업중앙회(2019a)에 따르면 은행차입 대출금을 대출 조건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 신용 및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각각 32.6%,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7.7%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부동산 담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IBK기업은행(2019)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63.2%가 외부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조달계획으로 회사 내부자금 및 은행차입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조달자금의 원천별 비중을 보면 은행이 63.2%로 가장 높고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은행 이용이 높은 반면 업력 10년 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기 기업

¹⁾ 국내에서 현재 동산금융이 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산금융과 동산담보대출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동산담보대출을 ABL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ABL도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이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은 동산금융에 대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입장에서는 현재 저금리기조에서 NIM (Net Interest Margin) 이 하락하는 등 전형적인 은행업무로는 이자수익이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수 익원을 찾아야 하고, 2020년부터 실행되는 신 예대율 규제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은 행에게도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8년 정책당국이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후 동산담보대출 및 IP담보대 출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개 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산금융에 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은행들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정책당국이 제시한 전략의 진척 정도를 평가한 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중 기계설비, 재고자산, 매 출채권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IP금융은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 서는 시장 중심으로 동산금융이 발전해 있는 미국과 정부 중심으로 동산금융이 추진 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국내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IV장에서는 해외제도와 국내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 점을 도출하고 정책과 시장의 진행상황을 평가한 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 책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앞 장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Ⅱ. 해외 동산금융 현황 분석

1. 해외 동산금융 현황 개요

동산담보대출(Asset-Based Lending: ABL)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법은 자금조달 수 단의 다양화, 신속한 자금조달, 재고 판매 등의 장점이 있어 해외 기업들이 주로 이 용하고 있으며, ABL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이 시장을 기반으로 동산금융이 성장해왔다면, 일본은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동산금융이 육성되어 왔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ABL은 상업금융기업(commercial financial company)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투자은행들이 ABL의 수익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ABL을 통해 대출을 받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산업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 의류업 등이 주된 이용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M&A와 관련된 대규모 자금 공급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대규모의 자금공급에도 ABL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출 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기업 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된 기업들의 금융을 돕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이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 동산담보를 제도화하고 정책금융투자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DBJ)이 시장 조성을 위해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ABL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민간부문의 자금회수기구 및 모니터링 전문 업체의 활성화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2. 미국 동산금융 현황 분석

(1) 제도 현황

ABL은 성장가능성은 있고 자산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거나 비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ABL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차주가 제공한 자산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 대출기준액을 조정한다(박훤일·이창규, 2014). ABL의 딜 구조를 살펴보면 다양한 대출형태가 이용되고 있으나 Credit facility, Term loan, Revolver 등의 대출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이 중 회전한도대출(Revolving line of credit)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ABL은 대출 금융상품 중에서 보면 팩토링(Factoring)과 일반 담보부 대출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팩토링은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허용하는 반면 ABL은 매출채권 이외에도 재고 등과 같은 동산에 대해서도 담보가 가능하다. 또한 팩토링의 경우 매출채권의 채무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ABL의 경우는 대

출자 이외의 거래상대방에게 대출 및 담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Childers and Martin, 2004). ABL은 일반 담보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기업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수단을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Article 9)의 동산담 보법을 1952년 도입한 이래, 총 3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UCC Article 9은 동산, 채권에 대한 모든 약정 담보권을 단일 법체계에서 규율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동산담보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UCC Article 9에서 규정하 는 담보물은 크게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분되는데, 이때 유체물은 용품(goods), 재고 (inventory), 농산물(farm products), 기계설비(equipment)로 구성되고, 무체물은 채권, 일반무체물(예: 저작권), 투자재산으로 구성된다(김정환, 2016).2

미국에서 활용하는 ABL은 동산담보를 설정할 때 일괄담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UCC에서 정의하는 담보권을 바탕으로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담 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동의하는 한 동산담보 계 약에서 일괄담보를 설정하는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BL의 경우 유체 동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 한도가 조정되는 회전한도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권흥진, 2019; Clark,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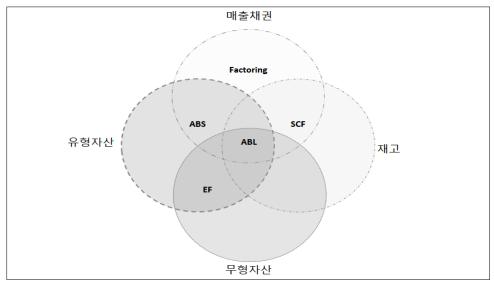
ABL의 담보 중 매출채권의 경우 가치가 정해져있고 상환조건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장 선호되는 담보이며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80~90% 정도의 자금을 공급한 다. 재고와 원자재 또한 ABL 거래에 있어 중요한 담보로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신용 사건 발생 시 유동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담보로서 적절하지만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의 경우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담보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고 및 원 자재의 경우 담보가치의 50%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담보에 비해 낮 은 수준이다.

기계류, 자동차 및 대규모 설치장비와 같은 고정자산 또한 ABL 거래의 담보로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 산정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3자 평가 기관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매출채권이나 재고 및 원자재의 경우와 달리 고정자산은 회전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장기 대출(Term

²⁾ 준유체물은 본 논문의 논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UCC Article 9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환(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loan)의 구조를 갖는다. ABL을 위한 담보에 반드시 동산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또한 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차주가 소유한 건물, 공장, 토지 등이 담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담보는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으로 인정되고 중장기 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담보부 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ABL은 매출채권(receivables), 재고, 무형자산, 고정자산 등 담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을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팩토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ABS의 경우 매출채권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허용한다. 선정산 채권(Supply Chain Finance; SC F)③의 경우 매출채권, 재고만을 담보로 허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ABL의 담보 범위는 다른 담보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담보 측면에서 ABL과 다른 담보부 대출과의 차이

주: ABS (Asset Backed Securities), SCF (Supply Chain Finance), ABL (Asset Based Lending), EF (Equipment Financing and Leasing Factoring).

자료: CFA, Secured Finance Foundation (2019).

³⁾ 선정산 채권(SCF)은 구매가 확정된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선정산 서비스 기업은 판매업체의 매출채권을 확인한 후 선정산 금액을 판매업체에 지급하며 이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정산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받는데, 투자자는 이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선정산 서비스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다.

담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ABL 대출에 있어 담 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담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들이 발전해 왔다. 특히 담보물에 대한 현 장조사, 담보물의 평가 및 처분 등과 같은 담보물 관리 중심의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제공되며, 또한 동산담보의 담보권 중복 등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UCC 등기 확인 관련 서비스도 존재한다. 대규모 서비스 업체들은 ABL의 담보가 되는 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관리, 유동화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Tiger Capital Group, Great American Group, Hilco Merchant Resources, Gordon Brothers 등이 있다(김정환, 2016; Rapp, 2018). 최근 들어서 는 Digital platform의 도입을 통해 종합적인 DB 구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체들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대출 신청부터 담보물 관리, 사 업부문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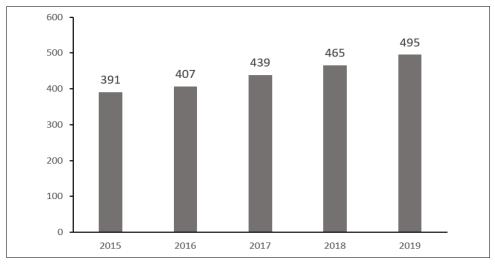
(2) 시장 현황

미국의 경우 ABL은 1970년대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최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ABL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ABL의 수익성이 부각되고 동산담보 제도가 개선 되면서 상업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1980년대부터 ABL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 였다(최원근, 2012).

CFA, SF Foundation (2019) 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미국 ABL 규모는 2019년 현재 약 4,95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약 6~7%의 성장세를 나타낸 다. 2018년 중 신규 대출 규모는 약 1,64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다. ABL 중 약 39%가 Non-syndicated 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syndicated 대출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4대 대 형은행이 전체 ABL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이 ABL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약 8. 2% (2018년 기준) 로 비은행 금융기관 또한 ABL 시장에서 일정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상업대출(commercial & industrial loans) 잔액과 비교하면 ABL은 대출승인 기준으로는 약 18.5%, 실제 대출 기준으로 는 약 8.5%를 차지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있어 자금공급수단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미국 ABL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FA, Secured Finance Foundation (2019).

Refinitiv에서는 미국 인수은행별 ABL 인수규모를 바탕으로 한 League table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업은행의 ABL 시장규모는 연간 약 800억 달러~9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8년에는 연 98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3분기까지의 대출규모는 약 7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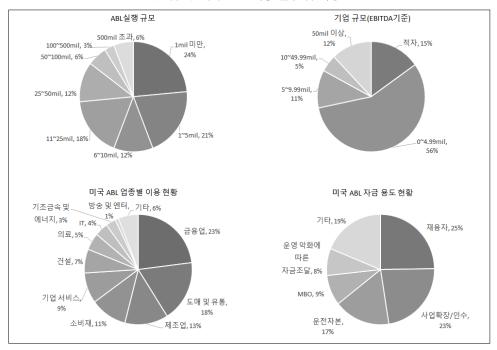
미국 ABL 시장에서 인수은행은 Wells Fargo & Company,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JP Morgan 등 3개 회사가 주요 인수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9 년 기준으로 해당 3개 은행은 전체 ABL 대출에서 약 53.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업은행의 ABL 사례를 보면 Wells Fargo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지역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ABL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BL의 대표적인 사례로 The Packaging Wholesaler에 1,200만 달러, Mode Transportation에 1.75억달러, Standard Furniture에 9,300만 달러 등의 Credit Facility를 제공한 바 있다. 5) BoAML은 ABL 전담 사업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ABL의 용도로 통상 운전자금

⁴⁾ Miller (2016) 는 abfjournal. com의 기사에서 은행의 ABL 시장규모는 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Refinitiv의 자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⁵⁾ Wells Fargo Capital Finance, Asset Based Lending, https://wellsfargocapitalfinance.com/solutions/abl/

및 설비자금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에도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BoAML의 ABL 담보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통상적으로 매출채권은 70~85%, 재고자산은 0~60%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 형태는 중장기대출보다는 회전한 도대출 방식 위주이다(최원근, 2012). JP Morgan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 ABL을 담당하는 사무소 18개소를 두고 있으며, 대출 형태는 일반적으로 Lines of credit 또는 term loa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BL 대출 규모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5백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그림 3〉 미국 ABL 시장 현황 및 특성

자료: Everett (2019).

Everett(2019)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ABL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ABL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경기민감 기업이 주 된 대출대상이며, 대출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소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금융

⁶⁾ JP Morgan Chase, Asset Based Lending, https://www.jpmorgan.com/commercial-banking/solutions/credit-and-financing/asset-based-lending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ABL 또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M&A 인수금 융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일부 ABL을 이용하고 있어 점차 대규모 대출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L의 대출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25백만 달러 미만 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ABL은 대규모 대출보다는 중소규모 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BL을 이용하는 기업들 중 약 71%는 연간 5백만 달러 이하의 EBITDA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ABL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ABL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 및 부동산업의 ABL 이용 비중이 23%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매업이 18%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ABL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L 자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융자, 운전자본 확충, 기업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과 같은 전통적인 용도 이외에도 사업 확장 및 인수, MBO (Management Buyout) 와 같은 기업인수 부문이 32%를 차지하고 있어 ABL 자금시장이 인수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본 동산금융 현황 분석

(1) 제도 현황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부동산 담보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이를 위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조조정기업과 회생기업이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이를 위해 2003년 동산양도공시제도를 정비하고 동산평가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 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해 이중담보 우려를 완화하고, 2007년에는 금융검사매뉴얼 등을 개정해 동산을 적격담보로 인정하였다. 2011년부터는 초기시장조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2011년 6월 성장기반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 동산, 채권담보 대출실적에 따라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ABL 특칙을 한시적으로(2018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였다. 대출한도는 총 5천억엔이고, 2년간 대출액이 총 한도의 23.2%로 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담보는 동산과 채권으로 일괄적으로 설정되며, 공통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회사채, 자산담보채, 외국국채, 국제금융기관채, CP, 증서대출채권 등이 포함된다. 대

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1회 차환이 되어 최장 4년까지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0.1%이다.

이후에도 일본은 동산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3년 ABL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발표, 동산담보대출 모델계약서 공표, 2014년 도쿄도 동산담보대출제도 시행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다.

시기	정책	주요내용			
2007	동산채권 양도등기 특례법안 마련	양도담보 등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07	유동자산 담보융자 보증제도	신용보증 대상을 동산담보융자로 확대하여 융자금액의 80%까지 신용보증협회가 보증			
2008	ABL가이드라인 발표	경제산업성, 동산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 발표			
2011	1 ABL특칙 발표 일본은행, 성장기반 부문에 금융기관의 동산채권담보 대출실적 저리의 자금을 대출				
2012	ABL 매뉴얼 작성 및 배부	경제산업성, 기업에 ABL의 내용과 절차 등을 소개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부(대상기업 리스트, ABL대출사례 등)			
2013	ABL의 적극적 활용 에 대한 발표	금융기관의 참고용으로 동산담보가 일반담보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 담보목적물의 평가율, 금융기관의 평가기준 등 제시			
2013	동산담보대출 모델 계약서 공표	경제산업성, 동산담보대출 모델계약서 공표			
2014	도쿄도 동산담보 대출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및 다양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제도 시행			

(표 1) 일본 동산금융제도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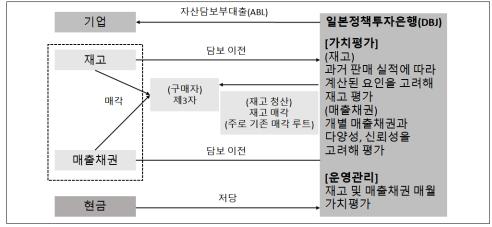
자료: 김정환(2016).

(2) 시장 현황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일본 동산양도등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동산양도등기 건수 및 개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양한 정책이 도입 되면서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의 자료를 보면 일본 금융회사의 담보별 대출 잔액의 비중이 신용대출이 40~50% 수준, 보증 30% 내외, 부동산담보 17%, 유가증권 담보 1%, 동산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담보는 2.4% 수준을 차지 하고 있다. 연도별로 기타담보 잔액 규모를 보더라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담보가 되는 동산은 절반 정도가 재고자산(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 고, 그 다음으로 설비기계, 매출채권, IP 순이다. 반제품의 경우 담보로 인정하고 있 지만 총 ABL 중 1.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 역시 기존 부동산담보와 보증 에 기초한 대출관행, 동산담보가치평가 민간기업 부재, 부도기업 담보목적물이 거래 될 수 있는 경매시장의 부재, 동산담보등기의 어려움(담보등기소 한정, 동경 1개) 등 이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은행 포항본부, 2013). 일본의 경우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성장기업 자금조달부 터 DIP금융까지 ABL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동산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DBJ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BJ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 투자, 자문 서비스 등 통합 투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경수, 2017). DBJ는 기업성장부터 회생단계까지 기업의 다양한 발전단계에 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DBJ의 자산담보대출 절차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재고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검토한 후 적합하면 담보를 승인하고 자금을 공급한다. 이동식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 기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DBJ의 자산담보대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 분은 가치평가 및 매각기구를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2006년 7월, DBJ는 미국 Gordon Brothers와 공동으로 재고 가치평가 및 매각을 주된 업무로 하는 Gordon Brothers Japan Co, Ltd, 를 설립하였다. 7)

⁷⁾ 일본에서 ABL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Plant Co., Ltd, Nakamura Jozo Co., Ltd, 묵동 (墨東) 건재공업 등에 대한 대출을 들 수 있다. Plant Co., Ltd에 대한 ABL은 사업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을 제공한 사례이다. 박스 제조업체인 Plant Co., Ltd는 매장확장을 위해 DBJ의 ABL을 이용했는데, DBJ는 박스재고의 감가상각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해 매장 및 공급망의 재고를 담보로 자산 기반 대출 체계를 설계했다. ABL이 DIP에 활용된 사례로 Nakamura Jozo Co. Ltd와 묵동(墨東) 건재공업주식회사가 있다. Nakamura Jozo Co. Ltd는 아오모리현에 본사를 둔 유명한 간장공장으로 투자실패로 인한 현금흐름문제에 직면하면서 2006년 1월 민사재생법에 따라 지원을 신청했으나 운전자본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에 Nakamura Jozo Co. Ltd는 DBJ를 통해 간장 재고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DBJ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후 간장재고를 추가 담보가 아닌 일차 담보로 인정하였다. 2006년 11월 Nakamura Jozo Co. Ltd은 DBJ 프로그램 이용으로 회생에 성공하였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묵동(墨東) 건재공업주식회사는 대기업 종합건설업자에 자제를 제작・납품하는 기업이었으나, 공사기간이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 민사재생 신청을 하게 되어 Gordon Brothers Japan을 통해 재고와기계설비뿐 아니라 베트남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DIP금융을 실행한 바 있다.



〈그림 4〉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ABL 구조

자료: DBI 웹사이트.

Ⅲ. 국내 동산금융 현황 분석

1. 동산금융 제도 현황

(1) 동산채권담보법 제정 및 동산담보대출 도입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기업의 담보여력이 줄어들면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장치의 미비로 인한 동산담보권의 법적 보장 제약, 부동산담보와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출관행 등의 여파로 동산담보대출은 전체 기업대출금의 0.01% (2012년 5월)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중 동산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는 자산항목들의 비중이 2011년 말 기준 약 39.8%인 점을 감안할 때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고 2012년 8월부터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였다(한국은행 포항본부, 2013).

또한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에 따른 등기소 업무처리의 지원을 위해 동산·채권담보 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6월에 동산·채권담보등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3년 7월에 인터넷 열람, 발급 및 전자신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

동산채권담보법 제정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약 6,000억 원의 동산담보대출자금이 공급되었으나, 이후 담보물 실종사고와 같은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동산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은행은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동산담보의 경우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의 신청이 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동산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 동산금융 활성화전략 추진

①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에 따라 동산, 채권 담보에 대한 등기공시제도가 마련 된 바 있다. 그러나 포괄담보 미허용, 담보권 설정자를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으 로 한정, 담보권 존속기간 한정(5년), 담보의 고의적 멸실, 훼손 시 제재 법적 근거 부재, 경매 종료시 배당 없이 담보권 소멸, 사적실행의 이행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정책당국은 2018년 5월 「동산금 융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상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 선안을 마련하였다(금융위원회, 2018a, 2018b). 특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동산 채권담보법 개정을 위한 TF (Task Force) 를 구성해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TF 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한 반면 동산채권은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를 누구든지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된 이후,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기제 도 개선, 처벌규정 도입 등을 위해 2019년 11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 었다. 개정안은 일괄담보제도 도입, 동산채권담보법 적용대상 확대, 사적실행요건 명확화,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등기제도 개선,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고 있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괄담보권의 정의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담보의 목적으로				
	신설	등기한 담보권임을 명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간 담보권 일괄설정, 동산과				
일괄담보	등기 및 등록 통합	채권등기부 일원화, 지식재산권 일괄담보등기시 등록부				
제도 도입		관장기관에 등기필정도 통지 및 등록부에 기재				
	일괄담보권에 관한	목적, 등기의 효력,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산,				
	별도의 장 신설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둠				
동산채권담보법	법적용 인적범위 확대	담보권설정자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자로 확대.				
적용대상 확대	B TO E TETT STATE	압류금지 채권 등의 준용 명확화				
집행절차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사적실행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선	1120 22 0 121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해 사적실행 활성화 도모				
담보권	존속기간 조문 삭제	기존 5년의 존속기간 규정 삭제(장기 담보대출의 필요성 등)				
존속기간 폐지						
	변경등기신설 변경등기신설	담보목적물 추가, 담보목적물 변경을 포함하는 담보권의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근거 마련				
	등기말소 단독신청	담보권자 등이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	근거 마련	등기말소 신청 근거 마련				
개선	경정등기 시 등기상					
,, ,	이해관계인 동의 규정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함				
	신설					
	등기부 작성 및	일괄담보제,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해				
	기록사항 정비	관련 등기규정을 정비				
	담보 동산에 대한	 고의로 훼손, 멸실, 은닉 또는 담보권자 동의없이 매각한				
처벌규정	훼손, 변형, 은닉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등에 대해 처벌					
	 친고죄 구성	담보권자가 담보가치를 확보하거나 채권을 실현하게 되면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친고죄로 구성				

자료: 법무부, 법제처.

② 동산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의 측면에서 동산금융의 정보를 집중, 분석 및 가공하여 은행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 MoFIS)을 구축하여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 래액 등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MoFIS는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축 되었고, 현재는 은행권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산금융 전 주기(감정평 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 표준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제공하며, 여신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 한도 및 금리 산정시 정보를 반영하여 운용한다.

③ 회수지원기구 마련

정부는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예산 400억 원 출자로 동산금융관련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2019c).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수지원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고, 대출부실 발생시 담보를 일정조건에 매입(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하며, 2020년 상반기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④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개정

은행연합회는 2018년 6월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8월말부터 시행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에 있어서는 40%를 적용하던 것을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상향하고 상한내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3〉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18.8.27. 시행)				
리하기하이	중소기업 및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	중견기업 포함				
대상기업 확대	유형자산, 재고자산 담보취급 제조업 한정	유통서비스업 모든 업종으로 확대				
441	취급 가능 최저신용등급 요건 불명확	최저신용등급 요건 폐지				
다바 하네	유형자산: 무동력 자산에 한정	유형자산: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을 허용, 세부요건 단순화				
담보 확대	재고자산: 원재료 등에 한정	재고자산: 반제품·완제품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				
대출상품 확대	전용상품(동산, 채권담보대출 한정)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				
담보인정비율 상한	원칙적으로 40%	우수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 → 60%) 하고 상한 내에서 자율 운영				

자료: 은행연합회(2018).

⑤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 변화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은행의 취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6월 동산금융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작하였고, 3년간 총 5,000억 원의 보증을 지 원할 계획이다.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 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 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신용보증기금, 2018a).

기관 상품 주요내용 대출대상: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신용 동산담보 미포함) 대출연계 지원규모: 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지원 보증 특례보증 우대사항: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 우대적용 기금 총 지원금액: 3년간 총 5,000억 원의 보증 대상기관: 중개금융기관인 은행(15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8개),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 선정 KDB 온렌딩 자금조달: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 산업 대상기업: B~BBB 중소기업 대출 은행 종류: 기본온렌딩, 특별온렌딩(동산담보대출 포함) 담보: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표 4〉정책금융기관 동산담보대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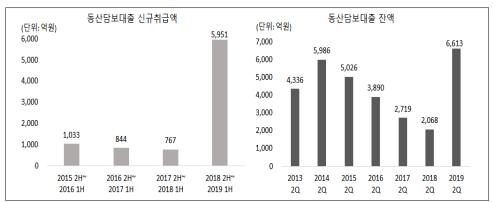
자료: 각사 웹사이트.

KDB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은 중개금융기관인 은행(15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8 개)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기업대출을 실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지원자금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데, 업력이 짧아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 B~BBB 기업이 주 대상이 다. KDB산업은행의 온렌딩은 산업은행이 은행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평가를 거쳐 대상업체와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온렌딩대출은 기본 온렌딩과 특별온렌딩 자금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온렌딩에 동산담보대출이 포함 되며,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담보 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 동산금융 시장 현황

(1) 시장 전반 현황

앞에서 언급한 동산금융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동산금융 대출규모는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2019a)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신규취급액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년간 767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동산담보대출 잔액 또한 2018년 2분기 기준 2,068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이 발표되면서 동산담보대출규모는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일반 동산담보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이후 5,951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잔액 또한 2019년 2분기 말 기준 6,613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5〉국내 동산담보대출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a).

또한 2019년 은행에서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받은 업체들의 총 대출금을 대출조건 별로 분류해 본 결과, 여전히 부동산담보가 가장 높았으나 2008년 50%에 달했던 비중이 2019년 34%로 감소하였고 동산담보의 비중은 2018년 0%에서 2019년 4.4%로 증가하였다(중소기업중앙회, 2019b).

(2) 일반은행 현황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특수은 행인 기업은행으로 2018년말 대비 2019년 9월 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120%에 달한 다.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동산채권담보대출'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담보인정비 율과 한도가 달라진다.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담보감정 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결정 되고 시설자금은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 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1년간 매출액의 1/3 이내로 최대 2회전 소요운전자금 한도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매출채권담보 대출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권설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능 하다. 동산담보는 부동산 등 타 담보와 중복운용은 불가능하나, 유형자산(개별동산) 담보대출 중 자금용처가 시설자금인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서 담보와 중복운용이 가능 하다. 동산담보대출의 계약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업 은행은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기반 스마트동산담보대출 상 품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여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기의 동산채권담보대출 중 매출채권담보 를 제외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에 해당되며, IoT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IoT 플랫폼을 통해 담보물 관리중인 차주 본인 소유의 동산에 한해 담보로 취득할 수 있 으며 역시 부동산 등 타 담보와 중복운용은 불가하다. 기업은행은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1조원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8년 6월 이후 4개월간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 원의 대출을 시행 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팝펀딩과 협업해 2019년 11월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출시했는데,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 자의 재고자산 평가ㆍ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팝펀딩은 2015년에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개시하여, 동 분야에 track record가 구축되어 있으며, 총 1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총 500억 원

^{8) &#}x27;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을 지원할 계획이다. 팝펀딩의 경우 파주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대출, 재고관리, 물류를 하나로 결합하였으며,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판매가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

〈그림 6〉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b) 재구성.

다음으로 국내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9월말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규모는 1,802억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80%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0.04%로 미미하다. 5개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 674억 원, 국민은행 544억 원, 신한은행 288억 원, 농협은행 250억 원, 우리은행 47억 원 수준이다. 이중 국민은행은 KT와 함께 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KB PIM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KB PIM은 IoT를 기반으로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과 철근 등 재고자산의 위치 및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자동관제 플랫폼으로 GPS가 탑재된 IoT 단말과 위치 정보를 탑재한 QR코드

⁹⁾ 동산채권담보법 제3조에서는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담보목적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원재료, 재고품, 축사에서 기르는 가축, 제품생산 전 원재료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에 대한 판례에서도 담보목적물의 증감에 대하여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법무부,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재고자산은 판매가 되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를 동산 담보에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요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동 산담보대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 기준 해제, 지원 대상 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재고자산 중 원재료 뿐 아니라 반제품 및 완제품 포함, IoT 담보관리 시스템 활용시 최대 55% 까지 담보비율 상향 등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반면, 과거 동산금융을 실행해 오고 있던 지방은행들의 경우 동산담보대출 규모에 있어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5〉에 따르면 전북은행을 제외한 4개 지방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은 2019년 9월 기준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일 반은행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동산담보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 세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우 동산담보대출 증가세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정책당국의 조치가 동산담보대출시장에서 구축효과를 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산대출금리는 은행별, 담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4~6%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 부산은행이 3.85%로 가장 낮고, 농협 4.18%, 신한은행 4.23%, 국민은행 유형 및 매출채권 4.87~6.00%, 재고자산 4.79~5.92%이다. 대체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을 준용하여 대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 제조업 한정, 신용등급 한정, 중견기업 미포함, 재고자산 중 원재료 한정, 필요시 연대보증 등의 기존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가이드라인에서는 60%를 상한으로 두고 있는 반면 대체로 80%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은행의 경우 100%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19년말에는 은행 이외에 카드사로 동산대출 실행기관이 확장되었다. 금융 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재고자산 담보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위해 '어 니스트펀드'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협업 금융회사는 신한카드이다. 고객 이 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 시, 어니스트펀드가 비금융데 이터를 수집·분석 후 재고자산 평가 결과 및 대출한도 등을 신한카드에 전송하면, 신한카드는 내부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결과를 통보하고, 차주는 어니스트펀드가 관 리하는 물류창고로 담보물을 물류 위탁하고. 신하카드는 차주에게 대출 실행하는 구 조로 이루어진다(금융위원회, 2019d).

〈표 5〉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업	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2012	55, 351	0	20, 134	19, 191	14,601	-	17, 736	22, 376	7,877	7, 481	2,855	8,086
2013	103, 028	3, 905	41, 580	40, 925	27, 723	-	29, 467	22, 728	12, 167	20,006	26, 555	16, 237
2014	120, 104	4, 905	44, 738	41,854	24, 147	-	28, 899	21, 914	16, 917	21, 345	23, 751	27, 119
2015	111,021	4,605	46, 965	28, 632	15, 625	36, 592	20, 068	19, 791	18, 629	17, 554	15, 523	37, 434
2016	90, 678	3,005	33, 857	15, 794	7, 110	34, 884	11, 250	12,000	28, 769	16, 178	6, 931	47, 491
2017	67, 193	4, 311	31, 136	11, 481	5, 613	25, 216	8, 181	7, 978	11, 149	12,010	3, 076	50, 695
2018 (A)	193, 148	13, 125	29, 847	11, 241	3, 897	41, 329	13, 662	7, 131	21, 227	10, 442	4, 574	73, 262
2019. 3	234, 637	16, 845	32, 031	18, 949	3, 452	47, 794	15, 032	6, 631	20, 628	8, 469	3, 376	72, 706
2019.6	353, 833	13, 593	41, 786	26,620	4, 512	56, 518	17, 659	6, 638	20, 216	8, 171	4, 345	80, 506
2019.9(B)	423, 873	13, 593	54, 368	28, 804	4, 678	67, 350	25, 014	7, 674	23, 194	7,830	5, 086	87, 670
증가율 (B/A)	119.5%	3.6%	82, 2%	156 . 2%	20.0%	63.0%	83.1%	7.6%	9.3%	-25.0%	11.2%	19.7%

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담보별 대출현황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그림 5〉 및 언론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IV. 동산금융 제도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동산금융 제도 평가

(1) 해외 제도와의 비교

국내 동산담보대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 정책당국의 제도개선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단 동산담보대출의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출이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동산담보대출의 특성상 미국 및 일본도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M&A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의 담보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매출채권, 재고, IP, 기계설비 등 전형적인 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담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특히 최근 들어 반제품에 대한 담보취급이 허용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반제품은 가치평가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담보로 취 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제품을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담보인정비 율이 여타 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괄담보 대상에서도 보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을 일괄담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동산, 매 출채권, IP 등만을 일괄담보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한국 및 일 본의 경우에는 동산담보대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 기존 부동 산담보부 대출과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대상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재고를 담보로 한 대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절반정도가 재고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매출채권의 경우 80~90%, 재고의 경우에는 5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은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 및 재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80%, 일부 은행의 경우 100%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국은 동산담보대출 시행 초기단계에서 정책당국의 지원으로 재고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활용방식의 측면에서 한국의 동산담보대출은 거의 대부분이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이 외에도 구조조정자금 지원의 용도로도 자금 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ABL은 재융자, 사업 확장 및 인수, 운전자본, MBO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부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용도에 제약을 둘 필 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참여기관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금융기관 이 외에 전문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 않은 반면, ABL의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치평가, 담보물 관리, 회수업무 등을 전담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UCC 등기확인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서는 동산담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동산담보대출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동산담보대출제도 는 중소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조달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동산만을 담보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에 제약이 존재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향후 조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대상기업	중소기업, 경기민감기업, M&A기업	성장기업, 구조조정기 업, 회생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담보대상	재고자산(원재료, 완제품), 기계설비, 매출채권, IP	재고자산(원재료, 반제 품, 완제품), 기계설비, 매출채권, IP,	재고자산(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기계설비, 매출채권, IP,
일괄담보 대상	동산, 채권, IP, 부동산	동산, 채권, IP	동산, 채권, IP
담보 인정비율	매출채권: 80~90% 재고: 50%	-	유형자산, 재고 80%(일부은행 100%)
활용방식	재융자, 사업확장 및 인수, 운전자본, MBO, 구조조정 자금 지원	운전/시설자금 지원, 구 조조정자금 지원	운전/시설자금 지원
참여기관	은행, 관련서비스업체(가치 평가, 회수지원, 실사, 등 기, 소프트웨어/플랫폼)	은행, 은행, 관련서비스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신 용보증기금, 핀테크업체(평가, 물 류), 캠코(회수지원)

〈표 6〉미국, 일본, 한국의 동산담보대출 비교

(2) 국내 정책 및 시장 평가

금융위원회는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4가지로 구분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포 함된다.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산, 채권담보에 대한 등기공시제도 확보 및 인터넷 열람 허용,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등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사적실행요건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산담보의 권리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중복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oFIS의 구축을 통해 중복담보여부 등의 주요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DB에 포함되는 세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 IoT 기술을 이용한 동산담보대출 등 사후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개선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담보물 실종 및 중복담보 문제는 제도적 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일정부문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출 회수와 관련된 인프라 마련은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방안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서의 민간부문의 노력과 정책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대상에 중견 기업을 포함하고, 기존 제조업에 한정되었던 담보 취급을 유통, 및 서비스업까지 확 대하였다. 또한 대상 담보물 측면에서도 모든 동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 대하는 등 여신우용체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상품 확대 의 측면에서도 모든 대출로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어 향후 자금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대출상품 개발 측면에서의 노 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동산담보 연 계대출, 온렌딩 대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대출 등은 단기 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연계대출의 종료 이후 동산 담보대출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권의 입장에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동산담보대출 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체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문제가 여전히 큰 문 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외상매출채권의 담보 인정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 기보다 시장에서의 관행상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매출채 권 담보대출 인정비율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구 매기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ABL에 매출채권이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 구 매기업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할 것

¹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기구 및 제도와 관련한 주제는 본문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 논문 에서 다루지 않는다.

으로 보인다.

동산담보대출의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2018년 5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제도가 발표된 이후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동산담보대출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년 이후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9월말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018년 말과비교하면 80%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0.04%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방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은 2019년 9월 기준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주요은행의 증가율과는 확연히 비교되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동산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정책 제언

(1) 가치평가 관련 정책

①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가치평가기구 확대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가 되는 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주로 동산의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를 보면 자금 수요자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가치평가사를 포함해 동산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존재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산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동산금융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직접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객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출실행기관이 가치평가를 수행할 경우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금의 수요자 및 공급자 이외의 독립적인 제3자가 가치평가를 수행한다면 담보가치의 적정성을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치평가기구로는 감정평가회사가 있으나, 국내 감정평가업계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동산담보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비용부담, track record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고자산의 경우 핀테크 기업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감정평가

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및 특허의 경우 공공 및 민간 가치평가기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산 전반에 대한 가치 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11) 즉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감정평가 회사와 공공부문의 가치평가기구를 활용하고, 이후 민간기관에서 동산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2)

② 가치평가료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산금융이 필요하지만 평가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평가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큰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 가비용 지원의 경우 IP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IP보유기업보증부대출, 기술 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과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에서의 평가료 지원을 예 로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은행 IP보유기업보증부대출의 경우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업체당 500만원인 기술평가료를 기업은행이 협약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부담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식재산(IP) 협약보증은 협약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 하여 협약보증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 건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은 기술평가료 500만원 중 특허청이 보증금액에 따라 360~4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가치평가료 지원을 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한다면 동산가치평가에 소 요되는 평가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담보 관련 정책

① 총자산 기준 담보설정을 통한 담보범위 확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산은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담보로 활 용될 수 있다. 현재 동산금융은 부동산이 적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

¹¹⁾ 특히 특허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평가기관이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 여 IP를 기초로 은행의 담보대출 시행 등에 평가결과가 활용되다. IP의 가치금액을 산정하는 전 문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은 현재 총 20개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11개, 민간 기관이 9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평가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¹²⁾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자산평가기구에서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 전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자산평가법 제2조에 따라 자산평가기구에 의한 가치평가만을 인정하고 있 다. 사전적 허가제가 아닌 사후 감독을 중심으로 자산평가기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0 개 이상의 자산평가기구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현진(2017) 참고하기 바란다.

고 있으나, 향후 동산금융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은 이후에는 부동산과 동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ABL에 대한 담보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으며 ABL에 포함되는 담보자산 중 약 30% 정도는 건물, 공장, 부동산 등이 차지한다. 이와 같이 담보물에 부동산을 포함하면 동산담보대출에서 담보가 제공하는 가치를 확대시켜 대출규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를 포함하는 경우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암묵적으로 강요하여 동산담보대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에 집중된 대출을 극복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도 타당하다. 그러나 담보부 대출에 동산담보만을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총자산에 대해 담보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대출 위험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낮아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위해서는 총자산 대비 대출 총량 설정, 정책당국의 담보구성 모니터링, 동산담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 규제

담보인정비율 측면에 있어서는 은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수동산에 한해 기존 40%에서 60%까지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은행의 대출상품 조건을 살펴보면,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은 $80\sim100\%$, 매출채권의 경우 100% 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담보별로 담보인정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매출채권의 경우 $80\sim90\%$, 재고나 원자재의 경우 담보가치의 50%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산금융이 도입단계인 것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과도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회수 과정에서 은행의 손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은행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수준에 부합하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동산금융 실행은행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는지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향후 DB가 구축되어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이를 근거로 적절한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정책

① 은행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예대율 규제 완화

현재 정책당국이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해당 대출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BK기업은행을 통한 1조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은 이용기업 에 대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5,000억 원 규모의 동산담보대 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대출을 운용하는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 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도 은행에 대한 자금지워 성격의 인센티브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중 기술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은행에 인센티 브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동산금융에 수동적 인 은행에 대한 패널티 부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는 직접적으로 은행에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예를 들어, 예대율 규제 시 동산대출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0년부터 실행되는 예대율 규제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 가중치 를 기존 100%에서 115%로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기존 100% 에서 85%로 경감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때 기업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85%를 적용 하기보다 동산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대출여 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② 보험을 활용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보험을 통해 은행에 동산담보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매출채권보험,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 대출연계 신용보험 등 다양한 매출채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연계 신용보험 중에는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중인 구매기업에 대한 보험보장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결합상품인 B2B PLUS+보험도 있다(신용보증기금, 2019). 이렇듯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험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의 담

¹³⁾ 과거 2012년 동산담보대출 도입당시에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과 연계해 한도배정기준의 일 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은행들은 이러한 유인책 보다는 상품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한국은행, 2013.6).

보로 사용되는 기계설비, 재고 등의 경우에는 이에 특화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로 활용되는 기계설비, 재고 등에 대한 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동산담보 대출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도 대출을 확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회수지원 정책

① 회수 인프라 확충

담보로 제공한 동산의 회수에 있어서 현재 기계거래소 등에서는 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을 매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유형자산 담보물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담보물의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재고자산 등 기타 동산담보의 경우 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매각이 거래소의 형태가 아닌 양자 간 거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산담보대출 자금 회수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2020년 상반기에 설립할 것을 밝힌 바 있다. IP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2월 한국발명진흥회를 사업전담기관으로 IP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였고(특허청, 2020), 이외의 동산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회수지원기구 설립이 추진 중이다. 동산 담보물을 용이하게 매매할 수 있는 회수지원기구의 설립과 함께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부실화된 동산의 유동화와 자금공급자의 투자금 회수에 도움을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의 조성 방식으로는 IP금융의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유사하게 모태펀드 중진계정의 자펀드로 운영하고 조성된 펀드의 일정비율 안에서 동산담보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방식을 활용한 은행의 자금 회수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위험을 낮추고 유인을 제고하는 동시에 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구조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산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MBS를 발행하는 구조로 은행은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위험을 경감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이 실행한동산담보대출을 풀링해 MBS과 동일한구조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동산담보대출의 경우 MBS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대출채권 매입,풀링,MBS 발행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는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5) 대출기관 및 활용방식 관련 정책

① 대출실행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동산금융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인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카드의 협업을 통해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주로 은행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 이외에도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카드사까지 해당 업무를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 예대율 규제 등 규제의 강도가 높은 데 비해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으며, 동산담보대출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맥락에서도 카드사의 동산담보대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수수료수익이 감소하고 대출수익을통해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카드사, 캐피탈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동산금융 활용방식 확대

동산금융이 현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한 이후에는 이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지원 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동산금융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산법 Chapter 11에서 파산보호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지급불능상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안유미, 2019). 일본도 묵동 건재공업 주식회사의 DIP금융에 있어서 재고, 기계 설비, 베트남 자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DIP금융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볼 때 법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은 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DIP금융이 이루어진 사례

에서도 대부분 부동산담보부 대출의 형태를 띄고 있다(박용린, 2019). DIP금융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기업 중 담보여력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DIP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시 동산담보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부문의주요과제로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강화를 위해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을지원하는 DIP금융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동산담보대출과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 DIP금융이 자리 잡고 나면 이를 동산담보대출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동산금융은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산금융을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V. 결 론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대출시장 상황에서 동산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일시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담보제도와 관련된 인프라의 미비 및 부적절한 대출관행 등으로 동산담보대출 시장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동산금융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은행 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회수지원기구마련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수은행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동산금융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동산금융시장을 미국 및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동산담보대출 대상기업 및 활용방식이 한정되어 있고, 일괄 담보의 대상도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가치평가, 등기서비스, 대출실행, 회수지원 등 전 단계에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한국은 정책금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기관들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의 국내 동산금융 정책을 평가해보면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 여신운용체계 개선 등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

¹⁴⁾ 박용린(2019)에 따르면, 국내 DIP금융 중 동산담보를 시행한 사례는 2017년 유니베이직코리아 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이 유일하며, 그 규모가 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평가, 은행의 인센티브 측면, 회수지원, 실행기관 및 활용방식에 있어서는 개선되 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 관련해서는 동산의 가치평 가를 위해 감정평가회사를 적극 활용하거나 특허의 가치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치 평가기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가치평가시 발생하는 비용지원을 통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담보 측면에서는 동산에 국한되어 있 으나 동산금융시장이 성숙한 이후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담보인정비율에 있어서도 초기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과도한 담보인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 경감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예대율 산정 시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조 금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보험제도 활용을 통해 은행의 대출 위험을 경감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동산담보대출 실행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나 회 수지원펀드 조성을 통한 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MBS와 유사한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해 은행의 자금회수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은행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카드사, 캐피탈사 등과 같 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제공해 대출실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는 향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논의가 시작된 DIP금융에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권흥진, "동산 일괄담보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금융 포커스』, 제28권 제7호, 한국금융연구 원, 2019, pp. 17-18.
- 2.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년 5월 21일, 2018a.
- ,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2018년 10월 17일, 2018b.
- _____,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7월 17일, 2019a.

- 5. ______, "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1월 26일, 2019b.
- 6. ______,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분 주요과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2월 23일, 2019c.
- 7. ______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2월 30일, 2019d.
- 8. 김정환,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06, 2016.
- 9.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국가정보화 연차보고서』, 2015.
- 10. 박용린, "기업회생을 위한 DIP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6, 2019.
- 11. 박훤일·이창규,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49권 제4호, 2010, pp. 95-118.
- 12.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1.
-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과밀업종 분석 연구』, 2016.
- 14. 신용보증기금,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2018.
- 15. ______, "신용보증기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매출채권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2019년 5월 20일.
- 16. 안유미, "국내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주요 제도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14호, 2019, p. 1-6.
- 17. 윤경수, "일본 대내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추진 동향 및 시사점-JFC · DBJ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 보 제742호, 2017.
- 18. 은행연합회,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은행연합회 보도 자료 2018년 6월 29일.
- 19. 이현진, 『콘텐츠 IP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7-03, 2017.
- 20.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2019a.
- 21. _____,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용 애로조사』, 2019b.
- 22. 최원근, "동산 등기담보 제도 도입 및 시사점,"『하나 금융정보』, 제16호, 2012년 3월 24일.
- 23. 특허청,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특허청,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개 최』, 특허청 보도자료, 2020년 2월 18일.
- 24. 한국은행 포항본부, 『경북동해안지역 동산담보대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3.
- 25.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9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2019.
- 26. CFA, Secured Finance Foundation, 2019 Secured Finance, Market Sizing & Impact Study Extract Report, June 2019.
- 27. Childers, Troy, and Marc J. Martin, Asset-Based Lending: A Training Guide to Secured Financing, First Edition, The Commercial Finance Institute, 2004.
- 28. Clark, Peter, Asset-Based Lending: The Complete Guide to Originating, Evaluating and Managing Asset-Based Loans, Leasing and Factoring, Irwin Professional Pub, 2017.
- 29. Everett, Craig R., *2019 Private Capital Markets Report*, Pepperdine Graziadio Business School, 2019, http://digitalcommons.pepperdine.edu/gsbm_pcm_pcmr/12.
- 30. Miller, Lisa A., "The World of ABL: Still Flat After All These Years," *abfjournal*, November/December 2016,

- https://www.abfjournal.com/%3Fpost_type%3Darticles%26p%3D54795.
- 31. Rapp, Jack, "Trends in Major Retail Liquidations: Potential Unintended Consequences," ABL Advisor, Sep 06, 2018,
 - http://www.abladvisor.com/articles/14717/trends-in-major-retail-liquidations-potential-uni ntended-consequences.

Policy Review on Asset-based Lending as a Tool of SME Capital Provision*

Hyunjin Lee** · Hyunsoo Joo***

Abstract

Since SMEs holding more movable assets than real estate have experienced in capital raising by banks' lending, the government initiated asset-based lending (ABL) program by establish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2012, but negligent until recently. In response, the government provided various policies from 2018 in order to facilitate ABL. We investigate the ABL development cases in the U.S. and Japan as a reference, compare these with the ABL initiation path in Korea,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ath and relevant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we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enhance ABL for SMEs. On valuations of ABL, certifications and fostering of private sector appraisal companies, and subsidization of appraisal fees to SMEs should be considered. Next, on the collateral issues, accept of all assets including movable and real estate ones may be adopted. Also, the banks should manage the movable assets' collateral ratio based on the value of asset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redit risks and loss from liquidations. Lower loan-deposit ratio for ABLs, asset securitization, and insurance offered by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be considered for reducing banks' risk and as a incentive to accelerate ABL growth in the financial markets. In addition, as a tool of loan recovery for banks, infrastructures such as recovery assistance fund and SME

Received: Jan. 8, 2020. Revised: March 6, 2020. Accepted: March 20, 2020.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r policies of the company and institute.

^{**} First Author, Chief Researcher, Kim & Chang,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03170, Korea, Phone: +82-2-6488-7324, e-mail: clotilde2c@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rea Banking Institute, 118 Samchungro, Jongro-gu, Seoul 03053, Korea, Phone: +82-2-3700-1659, e-mail: joo@kbi.or.kr

support organization may b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liquidation based on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BS) can be considered. Finall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covered with government's fostering plan, and Debt-In-Possession finance may adopt ABL in restructuring SMEs that have legal constraints for providing collaterals.

Key Words: asset-based lending, SME, movable asset collateral

JEL Classification: G1, G2